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서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0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8.

발 의 자 : 서영석 · 윤준병 · 이해식
박용갑 · 전종덕 · 노종면
윤후덕 · 한정애 · 소병훈
진성준 · 윤종균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등이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현행법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그 금액 수준이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.

또한, 현행법에는 마약류취급자 등이 업무정지나 허가 취소,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이를 공표할 근거가 없는 상황임.

이에 마약류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허가관청이 업무정지처분에 더하여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,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은 부과하지 못하게 하며, 업무정지·허가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 시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6조제1항,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신설).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제1항 전단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(같은 항 제1호가목, 자목 또는 더목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”로 한다.

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6조의2(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등) ①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약류취급자,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에 대하여 그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이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1. 제4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다목(제44조제1항제1호가목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)에 따라 허가·지정·승인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
2. 제44조제1항제1호자목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라목(제44조제1항제1호자목을 3회 이상 위반한

경우에 한정한다)에 따라 허가·지정·승인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

3. 제44조제1항제1호더목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

4. 제44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같은 호 차목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

②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

2.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

3.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규모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.

⑤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

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·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·자료

의 제공 요청에 관하여는 제46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.

제46조의3(위반사실의 공표) ① 허가관청은 제44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마약류수출입업자, 마약류제조업자,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제46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내용, 처분 대상자, 해당 마약류 등의 명칭 등 처분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, 절차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) 제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제1항·제2항, 제11조 또는 제32조를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징벌적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)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제1항·제2항, 제11조 또는 제32조를 위반하거나 제44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차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) 제4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4조제1항제1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6조(과징금처분) ①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이 경우 과징금 부과는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며,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.	제46조(과징금처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경우(같은 항 제1호가목, 자목 또는 더목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</u>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~ ⑤ (생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<신설>	제46조의2(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등) ①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약류취급자,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에 대하여 그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

5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다만,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이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1. 제44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다목(제44조제1항제1호가목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)에 따라 허가·지정·승인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
2. 제44조제1항제1호자목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라목(제44조제1항제1호자목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)에 따라 허가·지정·승인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
3. 제44조제1항제1호더목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
4. 제44조제1항제2호나목 또는 같은 호 차목에 따라 허가가

취소된 경우

②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
2.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
3.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규모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.

⑤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

<신 설>

법률」에 따라 징수한다.

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·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·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하여는 제46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.

제46조의3(위반사실의 공표) ①

허가관청은 제44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마약류수출입업자, 마약류제조업자, 마약류원료사용자 및 제46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내용, 처분 대상자, 해당 마약류 등의 명칭 등 처분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, 절차 등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